

(問) 生命保険에서는 保險料納入猶豫期間을 契約者에게 주는데 火災保険에서도 保險料納入猶豫期間을 줍니까?

(答) 保險料納入猶豫期間을 設定한 意義는 保險者가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에게 保險料納入에 必要한 餘有期日을 주기 위해서 또는 保險者 内部의 集金組織이나 그들의 代理店에 集金期間上의 便宜를 주기 为해서 設定된 것으로 1年 契約의 滿期時 更新할 必要가 있는 契約의 保險契約者の 更新意思表示가 있을 때 限해서 認定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回의 保險料納入으로 保險期間이 끝나고 更新必要가 없는 短期契約의 保險에서는 猶豫期間이란 것은 의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生命保険에서는 大部分의 保險이 長期間에 걸쳐 有効한 長期保險이기 때문에 保險料도 1回의 納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數次에 걸쳐서 納入하는 方法을 쓰게 됩니다. 더욱이 長期保險은 貯蓄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불입한 금액이 있는데 납입일에 보험료 납입이 안됐다고 해서 保險契約이 解止된다면 契約者에게 크게 不利益을 주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生命保険에서는 保險料納入期日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保險料納入猶豫를 주는게 慣例일 뿐만 아니라 約款上에도 明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火災保険에서는 大部分의 契約이 1年 期間으로 保險期間이 設定되기 때문에 1年 또는 短期火災保険에서는 猶豫期間이 없습니다. 그러나 火災保険에서도 長期

貯蓄性 各種 保險에서는 猶豫期間이 生命保険과 같이 유예기간을 다設定하고 있습니다. 即 長期火災保險約款 8條, 長期家計綜合保險 9條, 長期交通傷害保險 7條, 長期家族安全保險 7條, 長期家族交通傷害保險 8條 및 長期生活設計保險 9條 等에는 納入猶豫期間을 明記하고 있습니다.

保險先進國인 外國의 例를 보면 1年 滿期火災保險에서도 保險契約者가 事前에 更新契約을 하겠다는

實質적으로는 1年 滿期 火災保險에는 猶豫期間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保險料納入條件의 一般長期火災保險에 있어서도 猶豫期間에 對한 明示가 없고 F.O.C(Foreign) 約款의 3年 契約에서도 猶豫期間의 設定이 없기 때문에 이는 再考되어야 할 問題라 생각됩니다. 勿論 外國의 경우를 보면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이 約款上에 明記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慣例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明記없이 그러한 慣例가 形成되어 있지는 않으며 關係當局의 外上保險契約 規制指示에 따라 支給期日이 30日 以內의 約속어음으로 保險料現金納入에 가름할 수는 있지만 이때에도 所定期間의 利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特殊建物(法律第2482號에 依하여 付保 및 이의 每年 更新契約義務가 있는 建物)은 每年 更新契約하여야 할 義務保險이기 때문에 必然的으로 更新이 이루어져야 하는 保險契約의 特殊性으로 보아 保險契約者の 意思表示가 事前에 있다면 猶豫期間을 주는 것이 合理의이라 思料되지만 이는 保險契約者の 높은 保險認識과 信用이 先行되어야 함도 事實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保險者の 關心이 적었으나 現今에 와서는 保險者は 勿論 關係機關에서도 이에 대한 研究檢討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相談코너

保險相談

意思表示가 있을 때에는 15日間의 猶豫期間을 주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更新契約의 수락 여부는 保險者의 意思決定에 따른 사項이지만 만약 保險者가 更新契約을 수락했을 경우에는 滿期後 保險料納入이 없었다 하더라도 15日 以內에 罷災가 發生했을 때에는 保險者가 그 損害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國內法上 또는 約款이나 慣例上 1年 滿期 火災保險의 猶豫期間에 對한 얘기은 없고 保險料의 領收 없이는 보상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曹秉甲

〈業務部 代理〉